1	대학평가인증 및 국시 응시자격 제한 관련 제도개요

1. 개요

○ 의료인 **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** 및 **의료인 자질함양**을 위해,

① **의료인 양성대학**(의학, 치의학, 한의학, 간호학)에 대한 **교육부 평가인증을 의무화**하고,

② **평가인증 받은 대학**을 졸업한 경우에만 **국시 응시자격**을 부여

2. 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(※ 2015.12.22일 개정, 2016.6.23일 시행)

○ **(관련규정)**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제60조, 고등교육기관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

○ **(주요내용) 의료인 양성대학**은 **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***으로부터 **평가·인증을 받아야** 함

* 한국의학교육평가원,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,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, 한국간호교육평가원

○ **(행정처분)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** 교육부 장관의 **시정명령**을 거쳐 **1차 위반시 입학정원의 100% 범위에서 모집정지, 2차 위반시 학과폐지** 처분

3. 국시 응시자격 제한 (※ 2012.2.1.일 개정, 2017.2.2.일 시행)

○ **(관련규정)**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, 부칙 제1조 및 제2조

○ **(주요내용)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**을 **졸업한 사람**에게 국가시험 **응시자격 부여** (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)

- **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**에 **해당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**, 공개 전 입학한 자는 종전 규정 적용 (부칙 제2조)

2 관련 규정

1. 의료법

제7조(간호사 면허)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**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1. **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**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]을 **졸업한 자**
2.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.

부 칙 <법률 제11252호, 2012.2.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**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**

제2조(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,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**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**에 해당 과목의 대학,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**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**

② 제1항에 따라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2. 고등교육법

제11조의2(평가 등)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, 조직과 운영,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인정기관"이라 한다)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(학부·학과·전공을 포함한다)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 다만, **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**인정기관의 평가·인증을 받아야 한다**.